

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6 (월) 평 창 군 수
- 나. 회부일자 : 2006. 11. 15 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11. 16 (목) 제13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가. 「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」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- 가.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
 - 취득이 총 9건으로 61,107㎡ 9,519,121천원이고
 - 처분이 총 2건으로 31,947㎡ 66,797천원으로
- 나. 토지 매입, 건물 신축 등 취득은
 - 토지 매입이 2건에 12필지 47,672㎡ 165,103천원이고
 - 미탄 마하생태관광지 조성 부지, 마하리 81번지외 1필 4,879㎡
 - 용평 체육공원 조성 부지, 장평리 산266번지 외 9필 42,793㎡
 - 건물 신축이 5건에 5동 9,340,000천원임
 - 평창읍 문화복지센터 신축 1동 7,000,000천원
 -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 1동 700,000천원(환경복지과)
 - 도암면 보건지소 신축 1동 640,000천원(보건의료원)
 - 분회경로당 신축 2동 1,000,000천원(환경복지과)

다. 토지 교환 취득·처분은

- 총 2건으로 취득이 2필 9,179㎡이고, 처분이 6필 31,947㎡임.
 - 대화 위생매립장 진·출입로 확보를 위해 대화리 산233번지 13,587㎡를 처분하고, 동리 734-8번지 1,179㎡를 취득하는 것임.
 -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, 종부리 9-3번지 외 4필 18,360㎡를 처분하고, 동리 산85-5번지 8,000㎡를 취득하는 것임.

4. 검토 결과

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「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」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

- 취득이 총 9건으로 61,107㎡, 95억 1,912만원이고
- 처분이 총 2건으로 31,947㎡, 6,679만원임

나 취득재산을 세부적으로 보면

- 토지 매입은 2건 12필지 47,672㎡ 1억 6,510만원으로
 - 미탄면 마하생태관광지 조성과 연계하여 향후 백운산 생태 탐방로 주차장 및 백룡동굴 전시장 등 관광 편의시설로 사용하고자 미탄면 마하리 백운산 등산로 입구 문희마을 지역 2필지 4,879㎡를 7,761만원에 취득하는 것이고
 - 용평면 단위행사를 개최하던 舊전경대부지가 속사천 제방부지에 포함되고 강원도와의 교환예정에 있음에 따라 용평면 주민들의 화합의 장인 운동장이 없어짐에 따라 용평면 체육공원 조성을 조성하고자 장평리 산266번지외 10필지 42,793㎡를 8,748만원에 취득하는 것임
- 건물 신축은 5건 5동 93억 4,000만원으로
 - 종합사회복지관, 여성회관,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문화복지센터를 舊경찰서 부지인 평창읍 하리 113-1번지 일원에 지상 4층, 지하1층 연면적 4,242㎡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,

- 방림면 복지회관 신축은 문화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림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방림면사무소 앞 방림면 방림리 1271-2번지에 지상 1층 460㎡면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,
- 도암면 보건지소 신축은 도암면의 보건지소가 낡고 협소하여 도암면 주민들의 의료혜택 증진을 위해 횡계리 342-19번지에 신축하는 것이며,
- 경로당 신축공사는 분회가 없는 도암면과 진부면에 분회 경로당을 연면적 198㎡으로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토지교환은

- 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대화위생매립장 옆의 부지 대화리 734-8번지 1,179㎡와 대화리 산 233번지 15,587㎡를 교환 하는 것이고,
-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평창종합운동장 옆 부지 평창읍 종부리 산85-5번지 8,000㎡와 평창읍 종부리 삼방산 밑의 부지 종부리 9-3번지외 4필지 18,360㎡의 부지를 교환취득 처분하는 것임.

라. 검토의견

- 신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이 수해복구비 부담으로 인해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 군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자원대책이 필요하며
- 이번 교환 취득·처분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사전 철저한 대비로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되며,
- 아울러 명확한 감정평가를 통해 우리군에 재정손실이 없도록 분할 교환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, 교환의 경우 큰 면적으로 작은 면적과 교환하는 것은 당위성이야 있겠지만 군에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교환의 미래가치를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향후 이러한 사례는 금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 검토되었음